

의안번호	제 826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9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25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6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이옥규, 임영은,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송미애, 원갑희

1. 개정이유

- 인용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안 제5조제8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 인용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5조제4호)
 -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인용법령 제목 띄어쓰기(안 제5조제8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약칭 사용(안 제2조제3항)

- 도지사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아니한다 → 않는다
 - 것을 제외하고 → 것 외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을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으로,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을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으로, “출장일수를”을 “출장 일수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출장일수”를 “출장 일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를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제2조”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를 “중”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u>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u> 이 경우에 <u>출장일수</u>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u>아니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u>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u> 이 경우에 <u>출장 일수</u>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u>않는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p>

현행	개정안
<p><u>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략)</p> <p>② 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 <u>대하여는</u>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u>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u>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u>아니한다.</u> 2. (생략)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u>아니한다.</u>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u>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u>」제2조 	<p><u>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 <u>대해서는</u>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u>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u> 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u>않는다.</u> 2. (생략)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u>않는다.</u>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u>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u>」

현행	개정안
<p>및 별표 1에”로 본다.</p> <p>4의2.·5. (생략)</p> <p>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u>아니</u> 한다.</p> <p>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u>아니</u> 한다.</p> <p>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임용령」</u>”으로, “<u>일</u></p>	<p><u>제2조</u> 및 별표 1에”로 본다.</p> <p>4의2.·5. (현행과 같음)</p> <p>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u>않는</u> 다.</p> <p>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u>않</u>는다.</p> <p>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u>전문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u></p>

현행	개정안
<p>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p>	<p>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p>

관련법령 발취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1. 5. 25.>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 2021. 5. 20.]

[충청북도규칙 제3005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2015. 6. 5>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